

요약 보고서

# 청년농 농업경영컨설팅 운영방안 연구

2020. 6.



맥스컨설팅(주)

# [ 목 차 ]

## 제 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1

## 제 2장 컨설팅 지원사업 사례 분석

제1절 농업 분야 .....	3
제2절 중소기업 분야 .....	4
제3절 부처 대표사업 비교 .....	5

## 제 3장 청년농 심층컨설팅 시범사업 운영

제1절 시범사업 개요 .....	6
제2절 시범사업 수행 .....	7
제3절 시범사업 운영결과 분석 .....	14

## 제 4장 청년농 심층컨설팅 운영 지침

제1절 사업개요 .....	17
제2절 사업 절차에 따른 기관별 역할 .....	22
제3절 심의위원 및 컨설턴트 .....	32

# 제 1 장 연구 개요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가. 연구 배경

- 정부는 농업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을 추진
  -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은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되,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 반면, 청년농 대상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농은 농업경영에서 영농규모의 확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금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농이 과잉투자할 위험성이 높은 상황
- 청년농의 적극적인 영농투자는 규모화와 그에 따른 생산비 절감효과라는 긍정적 측면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부채상환의 부담이 높아지고 농산물 가격하락시 대규모 손실의 위험성 또한 높아질 수 있음

### 나.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가진 청년농의 농업경영 위험 감소 및 영농 실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 보완 및 효과적 투자방향 안내를 위한 「청년농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의 운영방안을 수립을 위해 추진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가. 연구 범위

- (연구기간) 2020. 3. 23 ~ 6. 20. (90일) [시범운영: '20. 4. ~ 6.]

- 청년 농업인(2040세대)의 창농 및 농업투자 컨설팅 수요분석
- 정부의 컨설팅 지원사업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청년 농업인의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방법론 구축
  - 사업 세부 추진절차 도출(사업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 전문운영기관 및 분야별 컨설턴트의 세부 자격요건 규정
  - 각 절차별 수행 및 관리체계 수립
    - 2~3명의 청년농 대상 시범컨설팅을 실시하여 연구내용 보완
    - 주요 투자 유형별 컨설팅 항목(내용), 소요시간, 비용(자부담 포함) 등 가이드라인 제시
    - 사업신청서(농업인이 신청서 작성), 사전 현장조사 양식 및 조사보고서(전문운영기관이 작성) 작성지침 마련
    - 투자 타당성 평가 보고서(컨설턴트가 작성) 양식 마련

## 나. 연구 방법

- (1단계) 문헌 연구
  - 청년창업농 및 귀농인 관련 문헌조사
  - 타 부문에서 시행중인 정부의 컨설팅 관련 지원사업 사례 분석
- (2단계) 비교연구
  - 타 부문에서 시행중인 정부의 컨설팅 관련 지원사업과 농업분야 컨설팅 사업 비교
- (3단계) 관련 전문가 대상 정성조사(심층면접)
  - 농업기술분야 및 농장경영 관련 전문가, 농업관련기관의 연구원, 농업분야 컨설턴트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 실시
- (4단계) 워크숍 개최
  - 영농인 대상 농업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사업관리 체계 및 운영, 품질관리, 성과제고 방안 등 도출
  - 정부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 및 조정

## 제 2 장 컨설팅 지원사업 사례 분석

### 1. 농업 분야

- 농업정책금융보험원의 투자유치컨설팅은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사업 : IR용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및 IR기회 제공
- 강소농 민간전문가컨설팅은 영농 전반에 대한 멘토 역할 수행, 작목선택 및 소득추정 등을 위한 시스템 제공
- 농업금융컨설팅은 고액대출 위험 회피 차원에서 시작, 영농규모가 큰 농업인 위주로 진행

<표 2 - 1> 농업 분야 컨설팅 지원사업

구분	농식품기업 투자유치 컨설팅	강소농 민간전문가컨설팅	농업금융컨설팅	
주관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사업 개요	농식품 경영체의 사업계획서 진단, 사업계획 고도화, 투자유치 역량 교육 등을 통해 농식품업체의 투자유치를 지원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생산기술, 판매, 경영기법 등 농업경영 전반에 걸친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서비스 제공	자금지원 위주의 농업금융 방식을 탈피하여 대출과 컨설팅을 연계한 지도금융을 구현하고자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농장재무컨설팅 서비스	
사업 내용	사업 대상자	농식품기업	농협이 지정한 농업인 (대출과 연계)	
	지원 내용	- 현장코칭 - 맞춤형컨설팅 - 투자유치역량강화교육 - 투자유치 공개 사업설명회	- 경영개선실천교육 - 현장 상담 (컨설팅) -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지원	- 농장투자계획 경제성 분석 - 농장경영진단 - 월별경영계획수립 - 대출상환계획수립
	비용	무료	무료	무료
	수행인력	수행사 (컨설팅사) 전문인력	농촌진흥청이 채용한 전문가	농협이 채용한 전문위원

\* 자료: 각 기관의 사업소개 홈페이지 내용을 자체 정리

## 2. 중소기업 분야

-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은 소액, 단기지원, 컨설턴트 등급제 시행, 낮은 자부담율이 특징
-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은 서비스 공급기관(기업)이 다양하고, 기업이 지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
  - ‘20년에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 컨설턴트 등급제 폐지
  - 자부담금은 10~50%로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차등

**<표 2 - 2> 중소기업 분야 컨설팅 지원사업**

구분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개요	경영애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개선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 내 용	사업 대상자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제조 중소기업 중 매출액 120 억원 이하
	지원 내용	- 마케팅 : 온라인 , 오프라인 - 경영진단 : 사업타당성 및 입지 분석, 업종선정 - 점포운영 : 가맹점가입, 매장관리, 구매 /절감 - 업종전문 : 노하우 및 비법전수	- 컨설팅 :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규제대응 -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기술이전, 규격인증 - 마케팅 : 시장조사, 디자인, 브랜드, 홍보
	비용	- 국비 90%, 자부담 10% - 자부담은 4 일 기준 총 120 만원 중 12 만원	- 국비 : 50%~90%(한도금액은 서비스별로 상이 ) - 자부담 : 매출액 3 억원 이하 기업은 90%, 50 억 초과기업은 50%
	수행 인력	- 전년도 등록컨설턴트 중 우수등급 이상 컨설턴트 - 신규모집 계획에서 선정된 컨설턴트	- 운영기관 선정한 서비스 수행기관 (기업 )

### 3. 부처 대표사업 비교

- 관리/운영체계, 지원금 구조, 사용방식, 서비스공급기업 등에서 차이
- 중소기업부는 ‘19년까지 진행된 컨설팅지원사업을 폐지하고, ‘20년에 처음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
  - 기업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관점에서 사업구조를 변경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

<표 2 - 3> 부처 대표사업 비교

구분		농업경영컨설팅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추진 체계	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지방중소기업청
	관리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기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수행기관	농업컨설팅 인증업체	바우처 서비스 공급자로 등록한 기업
사업 운영	지원대상	개별 및 법인 경영체	제조 중소기업 중 매출액 120 억원 이하
	지원 내용	-비용의 일부 (50%)를 최대 3 개년 지원 * 사전진단을 위한 기초컨설팅은 100% 국고로 지원 * 총사업비 : 개별경영체 1 천만원, 법인 3 천만원	-당년 바우처로 3 개 분야 14 개 프로그램 지원 * 컨설팅 4 개, 기술지원 6 개, 마케팅 4 개 분야 * 업체당 바우처 지원금액 : 최대 5 천만원
	사업절차	-신청 기초컨설팅수행 선정 -컨설팅업체 매칭, 수행계획서작성, 수행계획심사 -계약 수행 중간보고 /점검, 완료보고, 완료점검 -사후역량진단, 정산금지급	- 신청, 서면심사, 진단 /현장평가 (유선대체가능) - 지원 내용 및 금액 결정, 협약, 부담금 납부 - 바우처 발급, 수행기관 선택, 3 자 계약 - 서비스 이용, 완료보고서 제출, 정산
특징	-관리 및 운영기관의 통합 -국고 외 지방비 포함 -컨설턴트 등급제 시행 -지원신청서는 현황 중심으로 간단하게 작성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 관리기관, 운영기관으로 이원화 -국고와 자부담으로 구성 -컨설턴트 등급제 폐지 및 공급기업 등록 완화 -사업신청서를 기초로 지원대상 선정 -서비스 공급자를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선택	

## 제 3 장 청년농 심층컨설팅 시범사업 운영

### 1. 시범사업 개요

#### 가. 사업 개요

- 사업명
  - 청년농 대상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전 시범사업
- 지원대상
  - 2040세대 농업인 중 2억원 이상의 농업투자(농지·시설·스마트팜 등)를 준비중인 자
- 일정·규모
  - (일정) '20년 4월 ~ 6월
  - (규모) 만50세 미만의 청년농 대상 3명
- 지원방식
  - 청년농업인 중 희망자\*를 모집 ('20년 3월 말 ~ 4월 초, '청년창업농' 카페 모집)
  - \* 시설원예, 축산 분야에 6월까지 영농창업 계획을 준비하는 자

#### 나.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주요 지원내용) 신청자의 투자계획을 분석하고, 경영상황·기술수준 등 고려 시 가장 적합한 투자방식·내용과 방향, 필요한 역량 등 제시
  - 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품목전문 컨설턴트(농업분야)와 경영전문 컨설턴트(타 산업분야 포함)를 활용하여 컨설팅 진행
  - 지원자의 영농상황·역량과 해당 투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투자 계획(투자방식 및 규모)의 적합성 여부 판단 및 투자계획 수정·보완 지원



○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

- 모집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2~3명)을 초과할 경우, 별도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선정

다. 시범사업 추진 체계

○ 추진일정

- (1단계) 심층 창업·투자 컨설팅 시범 사업 대상자 모집 (~ 4. 7.)
- (2단계) 대상자 선정평가 위원회 운영(2~3명 선정) (~ 4. 10.)
- (3단계) 심층 창업·투자 컨설팅 진행 (~ 5. 22.)
- (4단계) 사전 시범사업 결과보고 (~ 6. 10.)

<표 3 - 1> 청년농 심층 경영컨설팅 시범사업 추진 일정

구 분	3월	4월				5월				6월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1단계)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	■									
(2단계) 평가위원회 운영			■								
(3단계) 심층 창업·투자 사전 시범 컨설팅 실시				■	■	■	■	■	■	■	
(4단계) 사전 시범 컨설팅 사업 결과보고										■	■

○ (소요예산) 금 1천만원 이내 (1업체당, VAT포함)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사후관리 및 홍보 / 운영비 / 일반용역비

2. 시범사업 수행

가. 수행 개요

○ 시범사업 참여 청년농 현황

- ‘청년창업농’ 카페 홍보를 통한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 경영컨설팅 시범사업 참여 청년농 3개 업체 모집

\* (주작물) 시설원예 2개 (콩 / 딸기) 및 사과 1개 업체

\* (평균 투자금) 업체 당 5억원 내외

## 1) 예산 청년농

○ (주작물) 콩, 배추 (시설원예)

○ (영농형태) 개인

○ 투자 계획 및 금액

- 출하조절 및 수요처 요구 대응 시설확충 (5억원)

○ 컨설팅 요구사항

- 투자 타당성 및 투자방향 자문
- 지자체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작성 지원

○ 수행 컨설턴트

- (경영) 경영전문 컨설턴트 (경영학 박사)
- (기술) 미수행 (필요성 없음)

## 2) 여주 청년농

○ (주작물) 딸기 (시설원예)

○ (영농형태) 개인

○ 투자 계획 및 금액

- 차별화된 체험농장 구축 (8.6억원)

○ 컨설팅 요구사항

- 투자 유치 자문

○ 수행 컨설턴트

- (경영) 경영전문 컨설턴트 (경영학 박사)
- (기술) 농업 마이스터 (딸기)

### 3) 거창 청년농

- (주작물) 사과 (일반원예)
- (영농형태) 개인
- 투자 계획 및 금액
  - 농외 소득 확대를 위한 제조시설 확충 (2.9억원)
- 컨설팅 요구사항
  - 사업 타당성 검토
  - 사업추진 관련 기술자문
- 수행 컨설턴트
  - (경영) 경영전문 컨설턴트 (경영학 박사)
  - (기술) 식품기술사 (식품가공)

<표 3 - 2> 시범사업 참여 청년농 현황

구 분		예산 청년농	여주 청년농	거창 청년농
영농현황	주 작물	시설원예 (배추, 콩)	시설원예 (스마트팜: 딸기)	사과
	영농형태	개인	개인	개인
투자계획	배경	출하조절 및 수요처 요구 대응	차별화된 체험농장 구축	농외 소득 확대
	내용	예냉시설 및 저온저장고, 운반차량	유리온실 (760 평), 체험용 부대시설	과채주스 가공공장 및 관련시설
	투자규모	5억 원	8.6억 원	2.9억 원
컨설팅 요구사항		- 투자 타당성 및 투자방향 자문 - 지자체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작성 지원	- 투자유치	- 사업 타당성 검토 - 사업추진 관련 기술자문
수행 컨설턴트	경영	경영학박사, 컨설턴트	경영학박사, 컨설턴트	경영학박사, 컨설턴트
	기술	없음 (필요성 낮음)	마이스터 (딸기), 영농인	식품기술사 (식품가공)

## 나. 수행 내용

### 1) 시범사업 수행 개요

#### ○ 사전진단

- 현장 방문하여 신청자 면담(2시간) 사업소개, 사전진단표에 의한 현황파악, 컨설팅 니즈 조사
- 심층컨설팅 준비: 필요전문가 탐색, 심층컨설팅 수행 전문가를 위한 사전진단서 작성

#### ○ 수행 과정

- (1차 컨설팅) 1차 컨설팅은 사전진단 전문가가 심층컨설팅 담당 경영·기술 전문가와 동행방문 현황설명 및 진행 안내
- (2차 및 3차 컨설팅) 2차 및 3차 컨설팅은 경영·기술전문가가 경영체와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수행

#### ○ 수행 내용

- (경영 분야) 투자관련 청년농 역량,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및 외부환경 평가 등의 관점에서 투자타당성 분석 실시
- (기술 분야) 투자관련 기술적 애로 및 기술분야 리스크 등에 대한 자문, 영농기술 자문 실시

### 2) 예산 청년농 심층컨설팅 수행 내용

#### ○ 청년농 역량 분석

- 지역 내의 청년농 네트워크 우수
- 선배농을 통한 기술 습득 양호
- 투자관련 사업추진 방향 명확

#### ○ 시장성 분석

- 안정된 판매망 구축 가능 (보관 출하시 고수익 가능)

- 기술성 분석
  - 저온보관의 기술적 애로는 낮음
- 경제성 분석
  - 투자 구체화시점에서 저온창고의 규모, 입지, 용도를 세밀 검토 후 투자 규모 산출 필요
- 환경 대응성 분석
  - 생협과 거래단절시 수익성 악화
  - 직판 및 학교급식 등 판로개척 필요
- 사후 관리 방향
  -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3) 여주 청년농 심층컨설팅 수행 내용

- 청년농 역량 분석
  - 창농 준비가 충실
  - 딸기 재배 관련 기술은 부족
  - 체험농장 마케팅역량 우수
  - 농장운영 관련 분석 충실
- 시장성 분석
  - 농촌관광 / 체험인구의 증가 (전체적인 시장 잠재성은 양호)
  - 수도권 입지로 고객유인 용이
- 기술성 분석
  - 딸기에 적합하고 가동시의 유지 관리비를 고려한 최적의 유리온실

설계가 필요

○ 경제성 분석

- 경제성은 비닐하우스가 적합
- 유리온실 투자비 검토 필요 (투자비용이 증가될 가능성 높음)

○ 환경 대응성 분석

- 소비자의 체험활동 욕구변화에 맞춰 선제적인 프로그램 도입 필요

○ 사후 관리 방향

- 딸기 재배 관련 기술 지원

#### 4) 거창 청년농 심층컨설팅 수행 내용

○ 청년농 역량 분석

- 투자관련 사전조사 철저 (사업관련 기회/위협 파악)
- 공장설립 등 세부지식 부족
- 생산 및 판매계획 점검 필요

○ 시장성 분석

- 거창 지역내 가공공장 부족
- 부친 및 본인 네트워크 양호 (임가공 주문 창출 가능)

○ 기술성 분석

- 식품제조허가 관련 공장설계
- 투자 효율성 측면의 설비 최적화

○ 경제성 분석

- 투자 후 공장가동률 제고 방안 필요

○ 환경 대응성 분석

- 경쟁에 의한 임가공 단가 하락 대비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전략 필요)

○ 사후 관리 방향

- 설비투자 최적화 및 구입 지원
- 생산품(주스) 맛, 품질 안정화 지원

< 표 4-3 > 시범사업 참여 청년농 컨설팅 수행 내용

구 분	예산 청년농	여주 청년농	거창 청년농	
타당성 분석	청년농 역량	- 지역내의 청년농 네트워크 우수 - 선배농을 통한 기술 습득 양호 - 투자관련 사업추진 방향 명확	- 창농 준비가 충실 - 딸기 재배 관련 기술은 부족 - 체험농장 마케팅역량 우수 - 농장운영 관련 분석 충실	- 투자관련 사전조사 철저 (사업관련 기회/위험 파악) - 공장설립 등 세부지식 부족 - 생산 및 판매계획 점검 필요
	시장성	- 안정된 판매망 구축 가능 (보관 출하시 고수익 가능)	- 농촌관광/체험인구의 증가 (전체적인 시장 잠재성은 양호) - 수도권 입지로 고객유인 용이	- 거창지역내 가공공장 부족 - 부친 및 본인 네트워크 양호 (임가공 주문 창출 가능)
	기술성	- 저온보관의 기술적 애로는 낮음	- 딸기에 적합하고 가동시 유지 관리비를 고려한 최적의 유리 온실 설계가 필요	- 식품제조허가 관련 공장설계 - 투자효율성 측면의 설비최적화
	경제성	- 투자 구체화 시점에서 저온창고의 규모, 입지, 용도를 세밀 검토 후 투자규모 산출 필요	- 경제성은 비닐하우스가 적합 - 유리온실 투자비 검토 필요 (투자비용이 증가될 가능성 높음)	- 투자 후 공장가동률 제고 방안 필요
	환경 변화 대응	- 생협과 거래단절시 수익성 악화 - 직판 및 학교급식 등 판로개척 필요	- 소비자의 체험활동 욕구 변화에 맞춰 선제적인 프로그램 도입 필요	- 경쟁에 의한 임가공 단가 하락 대비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전략 필요)
사후 관리 방향	-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딸기 재배 관련 기술 지원	- 설비투자 최적화 및 구입 지원 - 생산품(주스) 맛 품질 안정화 지원	

### 3. 시범사업 운영결과 분석

#### 가. 시범사업 운영 이슈 도출

##### 1) ‘사업 신청’ 단계 이슈

- 신청자가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의 사업취지와 내용을 오해하고 신청할 가능성이 있음

\* 사업 내용

- ① 투자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투자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자문
- ② 투자진행 및 투자완료 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기 지원(사후관리)

\* 청년농 인식 : 투자계획에 대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지원 또는 투자연계를 해주는 것으로 오해 가능

##### 2) ‘사전진단’ 단계 이슈

- 청년농이 투자계획을 구체화하지 않고 막연한 상태에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업 신청서에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사전진단을 통해서 컨설팅의 니즈와 투자계획과 범위, 투자시기와 자금조달 방법 등이 구체화됨

##### 3) ‘경영분야 심층컨설팅’ 단계 이슈

- 청년농이 구상하는 투자계획에 기반한 정태적 수익성 분석은 비교적 용이

\* 청년농의 투자계획과 규모가 단순하고 투자수익성 관련 변수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

- 수익성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수익성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과업



- 심층컨설팅 결과 보고서는 기술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경영전문가가 주도하여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

#### 4) ‘기술분야 심층컨설팅’ 단계 이슈

- 기술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정의 필요
  - \* 예산 청년농과 같이 기술자문 자체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
  - \* 거창 청년농과 같이 작물재배 기술자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도 존재
  - \* 여주 청년농은 투자관련 기술자문보다는 작물재배 관련 기술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

#### 5) ‘사후관리’ 단계 이슈

- 심층컨설팅의 결과물이 청년농의 투자계획에 대한 수익성분석으로는 사업 의미가 불충분
- 경영 및 기술전문가를 통해 청년농의 영농(사업)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 하는 것이 보다 중요

#### 6) ‘전문가 투입’ 단계 이슈

- 경영체의 투자계획 내용과 투자추진 상황 등에 따라 투입량 조절이 필요, 이를 담당할 PM 필요

### 나. 시범사업 운영 시사점

#### 1) 사업신청 대상의 확대

- 투자금액 제한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 부족 : 신청자가 투자 계획을 얼마든지 늘려서 신청 가능(상징적 의미로 2억원 유지)
- 사업 신청자격 제한을 최소화하고 사전진단을 통해 지원 필요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사업 수요창출과 정책의 보편성 요건을 충족

## 2) 고객중심적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신청 필요서류, 내용 등을 간소화

- 사업신청자에 대한 사전진단은 필수과정으로 판단되고, 심층컨설팅을 위한 세부 필요정보 파악도 사전진단에서 진행됨
- 따라서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제출서류는 최소화하고 사전조사를 통해 필요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고객중심으로 사업을 운영

## 3) 사전진단 인력의 전문화 필요

- 사전진단을 통해서 투자계획, 심층컨설팅의 니즈와 지원 필요성, 투자 타당성 분석방향, 필요전문가, 수행기간 등이 구체화됨
- 따라서 사전진단은 경영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술적 의사소통 가능 인력이 수행할 필요가 있음

## 4) 심층컨설팅에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할 경우 책임수행을 위해 PM을 지정

- 경영, 품목, 시설 등 다양한 전문가가 독자적으로 지원할 사항도 있으나 수행과정을 관리하고 수행결과를 종합할 책임자는 필요
- 사업운영기관은 PM을 통해서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와 완결성 측면에서 유리
- PM은 다른 참여 전문가보다 역할과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수당을 통해 보상

## 5) 충분한 사후관리 필요

- 청년농이 필요로 하는 경우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소극적 사후관리로는 창업농의 투자계획 실현과 목표 성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울 것임
- 월간 정기방문은 필수로 하고 적극적 연락과 상황점검 등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멘토 역할을 수행
- 사업비용의 한계상 사후관리 최대비용을 설정하되, 청년농이 추가 사후관리를 요구할 때는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하도록 운영

# 제 4 장 청년농 심층컨설팅 운영지침

## 1. 사업 개요

### 1) 목적

- 일정규모 이상인 청년농 투자계획에 대한 심층컨설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적정투자를 유도하며, 투자성공에 필요한 경영기술 역량 강화 및 수익 창출에 기여
  - 투자와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경영·기술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농의 투자효율성 제고

### 2) 사업대상자

- 개별 또는 법인 경영체로 사업신청일 기준 2040세대 청년농업인으로서,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농업투자를 준비 중인자
  - 경영체는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와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를 모두 포함
    - \* 작목반, 공선회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 청년농업인은 경영체 대표자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 ~ 만 49세 미만인 자

### 3)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지원자격

-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 중 세부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

구분		지원자격
개별 및 법인 경영체 공통필수		- (연령)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 - (투자계획) 사업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농업 투자금 2억원 이상을 계획 중인 자
개 별 경 영 체	후계농업경영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귀농인	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단독세대 가능)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법 인 경 영 체	공통	- 사업 신청시 설립 2년 이상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 나.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 다. 선정우선순위

구분	선정 우대 기준
법인경영체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자 대표로 있는 법인 2. 모태펀드 투자 법인 3. 농어촌 사회공헌 인증기업 4.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법인
개별경영체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2. 농업계학교 졸업생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공통)	1. 여성CEO 경영 2. 6차산업인증사업자 3. 지적재산권 등 특허 출원 4. ISO, KS, JIS, UL, CE 등 국내외 규격 및 Q마크 등 품질인증 보유 5. 친환경농산물인증, 지리적표시등록, GAP인증,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 HACCP, 전통식품품질 인증, 유기식품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저탄소농축산물인증, 술품질인증 등 농식품부 인증 보유

## 4) 지원내용

- 청년농 창업·투자 컨설팅 비용의 일부(90%) 지원
  - 심층컨설팅 : 사업수행 역량 진단, 시장성 분석, 기술성 분석, 수익성 분석 등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 투자 전 정기 멘토링 : 심층컨설팅 완료보고 후 투자개시 전까지 정기적인 상담 제공(상담분야는 청년농의 필요 분야 전반)
- 투자착수 후 방문 자문 : 사후관리기간(신청일 기준 1년) 내 투자가 실행되는 경우 3회까지 전문가 방문 상담을 지원
- 사전진단 : 지원 대상 경영체 선정 및 현황 파악

## 5) 지원 방법

- 창업투자컨설팅 : 국비 70%, 지방비(시도) 20%, 자부담 10%
- 사전진단 : 사업신청 경영체(개별·법인)의 투자계획 확인 및 심층컨설팅 필요성 및 수행방향 등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진행
- 심층컨설팅은 총비용의 90%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국고지원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국고보조 한도액까지만 지원하며,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 가능

## 6) 지원한도

- 경영체별로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한도 700만원) 이내

## 7) 심의위원 및 심의위원회

-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 심의위원의 역할
  - 사업신청 경영체(개별·법인)에 대해 사전진단 결과 확인 및 심층컨설팅 전문분야 추천
  - 사업신청 경영체(개별·법인)의 영농규모, 투자계획금액 및 사전진단을 통해 파악된 컨설팅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
  - 운영기관에 설치하며 심의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
  - 운영기관의 업무담당 직원 포함 가능

- 심의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결정하며 의사결정으로 운영
- 필요시 사전진단 전문가를 출석시켜 심의에 필요한 사항 청취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 지원대상 청년농의 선정

## 8) 심층컨설팅 지원 분야

○ 경영체(개별, 법인)가 투자계획과 역량을 고려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 심층컨설팅 분야는 사전진단 전문가가 사업신청 경영체에게 수정 제안 할 수 있으나, 최종 지원분야는 사업신청 경영체가 결정

**〈컨설팅 지원분야〉**

분야	세부 지원 분야	컨설팅 주요내용
창농 타당성 컨설팅	① 품목선택	특정 품목(작물 또는 축종)을 영농분야로 선택하고 필요한 농지나 시설 등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선택 및 투자 타당성 검토
	② 농장경영전략	청년농의 단기, 중장기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영농 투자계획을 수립을 지원하고, 투자에 따른 소득추정 및 자금상환 계획 등의 타당성 제고
투자 타당성 컨설팅	③ 생산시설 투자타당성	농가의 시설설비를 현대화(ICT 등)하고, 운영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 설계, 시설구축,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공정개선,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세부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투자효과를 분석
	④ 가공/제조 사업화 타당성	1차 생산물의 가공사업화 또는 생산물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자문 및 투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⑤ 출하조절 투자타당성	농가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고 생산물의 출하조절을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 가능성 평가후 필요시설과 장비 등의 투자계획 수립 및 투자효과를 검토
	⑥ 유통시설 투자타당성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유통시설 구축, 유통채널(온라인몰 등) 구축투자를 계획하는 경우의 타당성 검토
	⑦ 품질개선투자 타당성	경영체가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농작물 재배 관리, 축산 사양 및 사료 관리, 종축 및 번식관리, 질병관리, 노동력절감 등을 계획하고 투자할 경우의 타당성 검토
	⑧ 6차산업화 타당성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농장을 활용하여 상품개발, 유통 및 판매 등 6차 산업화를 계획하고 투자하고자 할 경우의 타당성 검토

## 9) 사업추진체계

### ○ 기관별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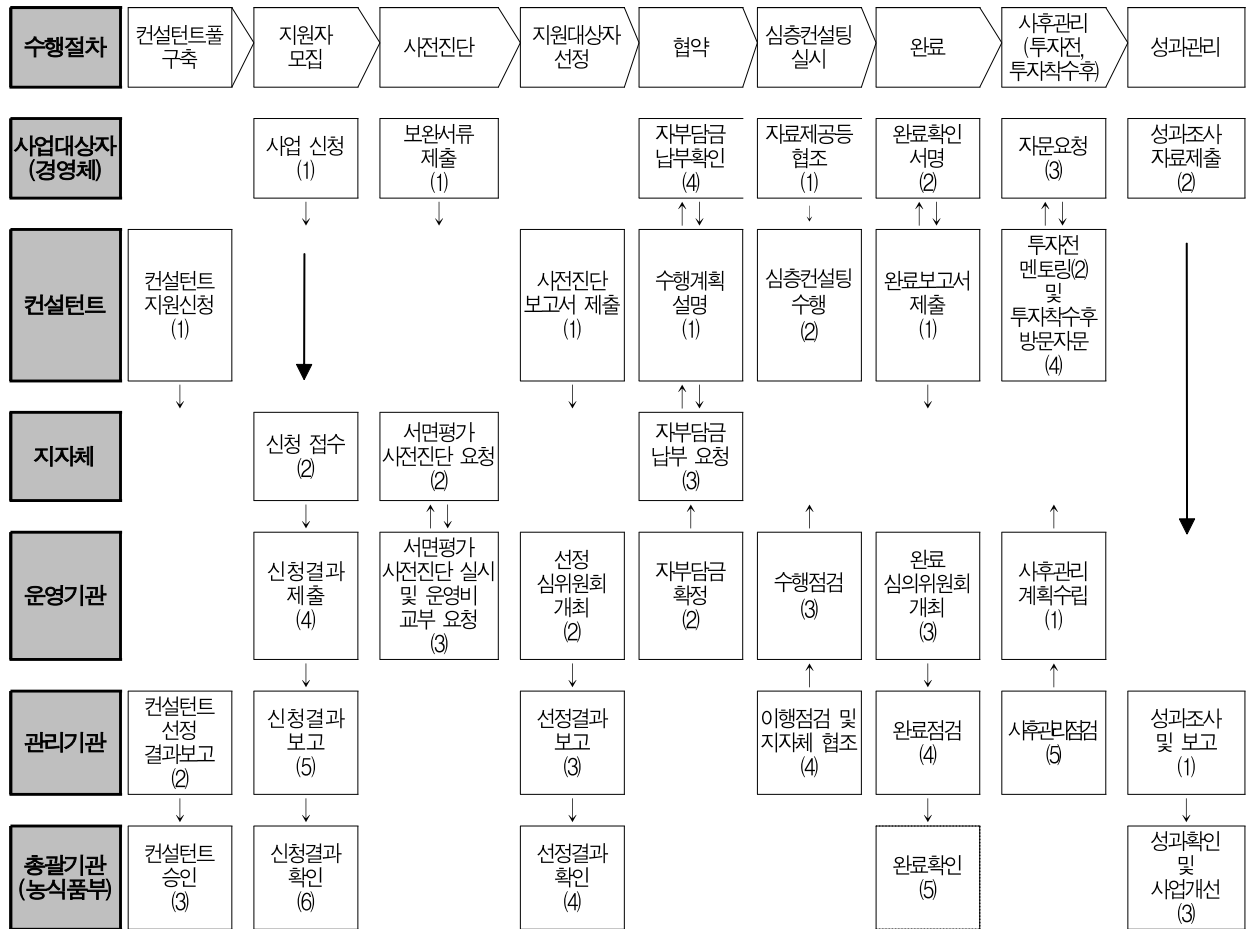
####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운영지침 수립
관리기관	○ 사업 대상 모집 홍보 ○ 컨설턴트 POOL 등록·관리 ○ 특별 이행 점검 및 성과 조사
운영기관	○ 사업 대상 모집 홍보 및 사전 진단 수행 ○ 지원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컨설팅팀 구성 및 심층 컨설팅 수행 ○ 투자 전 장기멘토링 및 투자 후 자문
지방자치단체	○ 사업 대상 모집 홍보 ○ 사업 신청 접수 ○ 지방비 예산 확보 및 집행

### ○ 사업수행 절차와 수행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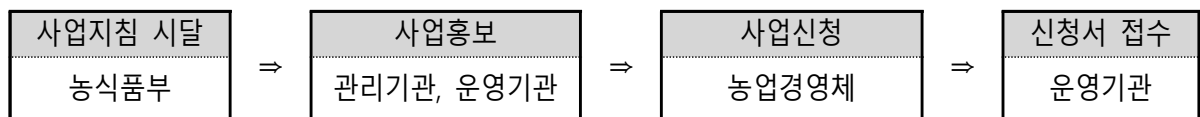
사업절차	업무 수행기관(시범사업)
사업신청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사업계획 수립·통보 농식품부</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사업홍보 관리기관, 운영기관 시도</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사업신청 경영체 → 시도(시군구)</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서면평가·제출 시도 → 운영기관 *운영비 교부 포함</div> </div>
대상자 선정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사전진단 실시 운영기관</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대상자 심사·선정 운영기관</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운영기관 → 시도, 관리기관, 농식품부</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대상자 선정 통보 시도(시군구) → 경영체</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자부담 납부 경영체 → 운영기관</div> </div>
사업시행 및 이행점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컨설팅 팀 구성 운영기관</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심층컨설팅 PM 및 분야별 전문가</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심층컨설팅 결과보고 PM → 청년농</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심층컨설팅 완료보고 PM → 운영기관</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컨설팅 완료심의·결과보고 운영기관 → 시도, 관리기관, 농식품부</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컨설팅 비용(예산) 집행 시도 → 운영기관</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컨설팅 비용 지출 운영기관 → 컨설턴트</div> </div>
사후관리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투자전 정기 멘토링 과제책임자(PM) → 경영체</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투자 착수후 방문컨설팅 컨설턴트 → 경영체</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성과조사 운영기관 → 청년농</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최종보고 운영기관 → 관리기관, 농식품부</div> </div>

○ 사업추진 절차별 업무흐름



2. 사업 절차에 따른 기관별 역할

1)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관리기관, 운영기관에 시달



## 《농업경영체》

### ○ 사업 신청

- 접수기간 동안 청년농은 창업·투자 컨설팅신청서[별지 서식 제1호], 투자계획서 [별지서식 제2호]와 사업신청 관련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 신청 마감일에 제출서류를 전부 구비하지 못한 경우 사전 진단 시 제출 가능
- 접수처 : 거주지 시군구의 농업경영컨설팅 담당자를 통해 시·도에 제출
- 신청기간 : ~ 7월 24일까지
- 구비서류 : 지침 내 서식 참조

사업신청 관련서류		작성양식	비고
공통 필수	청년농 창업·투자 컨설팅 신청서	별지 서식 제6호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개별경영체 중 회계장부 기록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지원 대상 선정 시 '농가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사전진단 후 반드시 제출	사본	결산서로 대체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록증 사본	조직경영체 제외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농식품부지자체·농업 관련 공공기관·농업인 단체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	관련서류 사본	해당자에 한함
개별 경영체	(공통) 농업교육* 및 경영교육(직무교육) 이수 확인서 ※ 귀농 및 후계농 관련 교육 이수 확인서, 농업계학교 졸업 증명서, 실무경험** 보유여부 확인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 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 단,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 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확인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귀농인) 주민등록등본, 농업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후계농)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법인 경영체	(공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명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영농조합법인)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중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관리기관, 운영기관》

- 관리기관과 운영기관은 잠재적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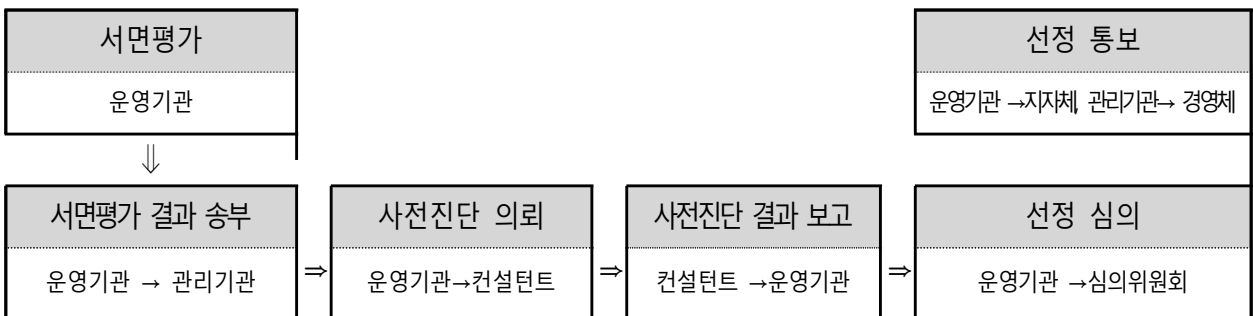
《시·군·구》

- 시군구는 접수된 신청서류를 시·도로 전달

《시·도》

- 시도에서는 사업신청 경영체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투자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근거로 서면평가표[별지 서식 제3호]에 따라 서면평가하여 기준 이상의 사업신청 경영체 중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운영기관에 전달

2) 사업자 선정



《운영기관》

- (서면평가 검증) 운영기관은 시도에서 제출한 선정경영체의 평가표를 검증하여 사전진단 대상을 사업량의 1.5배수 선정(서면평가 20점 이상 득한 자)
  - 운영기관은 '20년에는 각 시도에 지방비 확보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진단 대상을 최종 결정
- (사전진단) 운영기관은 PM과 컨설턴트 POOL에 등록된 컨설턴트가 서면평가에 통과한 경영체를 방문하여 사전진단 실시
  - 사전진단은 [별지 서식 제3호]를 활용하여 영농현황, 투자계획, 사업화 계획, 기술수준 등을 진단
  -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체의 컨설팅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컨설팅을 진행할 분야와 컨설턴트의 전문 분야를 제안하고 컨설팅 기대효과 도출

- (미비 서류 보완) 사전진단시 컨설턴트를 통해 지원 농업경영체가 사업 신청시 미제출한 서류를 보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선정심의 자료 제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신청 경영체가 제출한 서류와 자료, 사전진단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
- (선정심의위원회) 신청 경영체의 신청서, 사전진단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경영체 선정
  -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선정 등을 위해 5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 선정 등을 추진
    - \* 운영기관은 축산, 경종작물 등 성격에 따라 복수의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가능
  - 심의위원의 역할
    - ① 사업신청 경영체(개별·법인)의 영농규모, 투자계획금액 및 사전진단을 통해 파악된 컨설팅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 ② 사업신청 경영체(개별·법인)에 대해 사전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운영기관에서 제출한 심층컨설팅팀 구성의 적정성 검토
    - ③ 컨설팅 완료 후 완료평가 실시
  - 선정심의위원회에는 관리기관의 담당직원을 필히 포함하며, 필요시 운영기관의 업무담당 직원 포함 가능
  -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원장의 책임하에 운영
    - \* 심의위원회는 필요시 사전진단 전문가를 출석시켜 심의에 필요한 사항 청취 가능
  - 심의위원은 컨설팅 선정평가표[별지 서식 제5호]에 따라 심의 실시
  - 심의위원회는 지원여부 심의 결과에 따라 심의의견서[별지 서식 제6호]를 운영기관에 제출
- 운영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해당 시·도와 관리기관 즉시 통보

### 《농업경영체》

- (사전진단 협조) 사업신청 경영체(개별·법인)는 투자계획, 조수입 및 심층컨설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진단에 적극 협조해야 함(의무사항)
- (미비서류 제출) 사업신청 경영체(개별·법인)는 사업신청 당시 미제출 서류를

사전진단 시 반드시 제출(필수서류 제출 미완료 시 선정 탈락)

- (자부담금 납부 약속서 제출) 사업신청 경영체(개별·법인)는 사업신청서의 영농현황 및 투자계획, 컨설팅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지원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자부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자부담금 납부약속서[별지 서식 제7호]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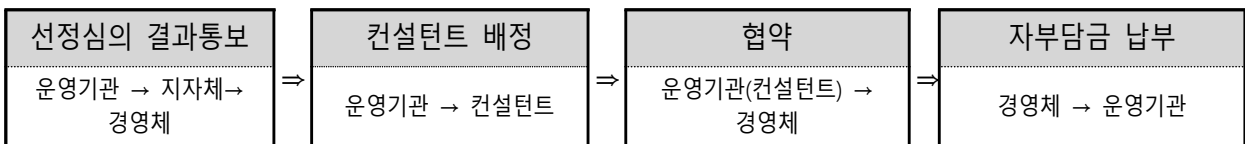
### 《관리기관》

- (선정심의위원회 참여) 관리기관은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여
- 관리기관은 농식품부에 선정결과 보고

### 《시·도》

- 시도에서는 선정 또는 미선정된 결과를 해당 경영체에 통지

## 3) 협약



### 《운영기관》

- (사업진행 안내) 운영기관은 선정된 경영체(개인·법인)에게 심층컨설팅을 위한 협약, 자부담금액, 담당컨설턴트, 사업진행절차 등을 설명
- (협약 체결)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협약서[별지 서식 제8호]를 작성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에 송부하여 협약체결
  - (자부담금 납부안내) 협약후 운영기관은 경영체가 납부할 자부담금액과 납부계좌,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을 안내하고 납부예정일을 파악
  - (협약 중지) 지원대상 경영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협약 중지 또는 선정 취소 사항'에 해당될 경우 협약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경영체 및 관리기관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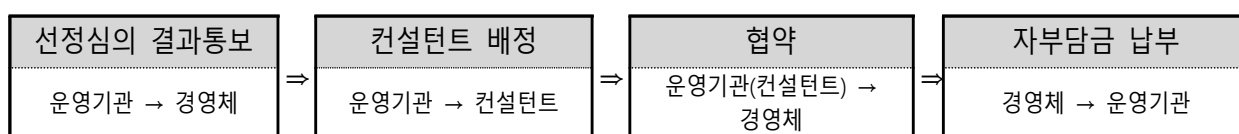
#### 협약 중지 또는 선정 취소 사항(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협약 전 사업진행 포기
  - \* 사업포기의 경우 반드시 사업포기서(공문포함) [별지 서식 제20호] 제출(경영체 → 운영기관)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서류 미제출
- 사업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 《농업경영체》

- (협약체결) 협약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에 협약서를 날인하여 운영기관에 회신하여 협약체결을 완료
- (자부담금 납부) 협약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자부담금은 심층컨설팅 착수 전 납부 및 관련증빙(입금확인증 등) 운영기관에 제출
  - \* 자부담금은 사업시작 전 50%, 완료보고 이전까지 50% 2회에 한해 분할 납부 가능

## 4) 심층컨설팅



### 《운영기관》

- 운영기관은 대상 경영체의 품목 등을 고려하여 과제책임자(PM) 지정
  - 과제책임자(PM)는 사전진단, 심층컨설팅(2회 이상 현장 방문 컨설팅), 투자 전 멘토링, 투자착수 후 사후관리 순과정에 참여
  - 다만, 청년농의 투자분야의 특수성 등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 후 컨설턴트의 POOL에서 PM을 선정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PM 회의를 거쳐 컨설턴트 POOL에 포함된 전문가로 청년농의 컨설팅 필요 분야를 반영한 각 과제별 맞춤형 컨설팅 팀을 구성
  - 단, 컨설팅 팀 구성시 농업관련 기술 전문가 1인, 경영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구성
  - 과제책임자(PM) 자격기준

과제책임자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교 조교수 이상</li> <li>· (연구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급 이상</li> <li>· (전문직) 회계사·세무사·변호사·변리사·기술사·경영기술지도사</li> <li>· (유관기관) 컨설팅 관련 기관·협회 소속으로 팀장급 이상</li> <li>· (기타)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거나 농업마이스터·신지식농업인 등</li> </ul>

- 과제책임자(PM)는 지원대상 경영체당 최소 6회의 현장 방문을 통한 컨설팅이 수행되도록 일정을 수립하여 컨설팅 수행
  - (착수회의) 과제책임자(PM)는 참여 컨설턴트 및 경영체가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심층 컨설팅의 수행방향, 수행일정,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명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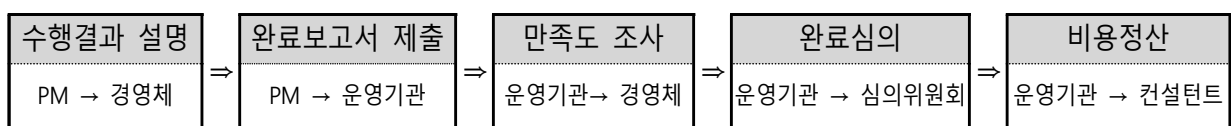
\* 참여 컨설턴트는 사전에 PM의 요청에 따라 수행 계획을 제출

- (컨설팅 투입 기준) 경영 및 기술분야의 컨설턴트는 각각 착수회의를 포함하여 최소 2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컨설팅을 수행하고, 나머지 투입일수(총 6회 중 2회)는 경영체의 필요를 고려하여 과제책임자(PM)가 투입 분야를 결정
- (컨설팅 수행일지 제출) 컨설팅 실행 사항을 일자별로 정리한 수행일지를 작성[별지 서식 제9호]하여 컨설팅 수행 후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
- (컨설팅 수행 증빙) 수행일지 제출시 현장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현장사진, 교통비 영수증 등)를 첨부해서 제출
- (결과회의) 과제책임자(PM)는 협약완료일 7일전까지 참여컨설턴트의 심층컨설팅 수행결과를 취합하여 완료보고서[별지 서식 제10호]를 작성하고 내용을 경영체에게 설명

○ 운영기관은 컨설팅의 진행관리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

- (컨설팅 진행관리) 컨설팅 제출된 수행일지를 확인하고, 업체별 컨설팅 진행 상황을 파악·관리
- (자부담금 납부관리) 운영기관은 경영체가 착수 전에 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하고 자부담금 관리

## 5) 심층컨설팅 수행완료



### 《운영기관》

○ 과제 책임자(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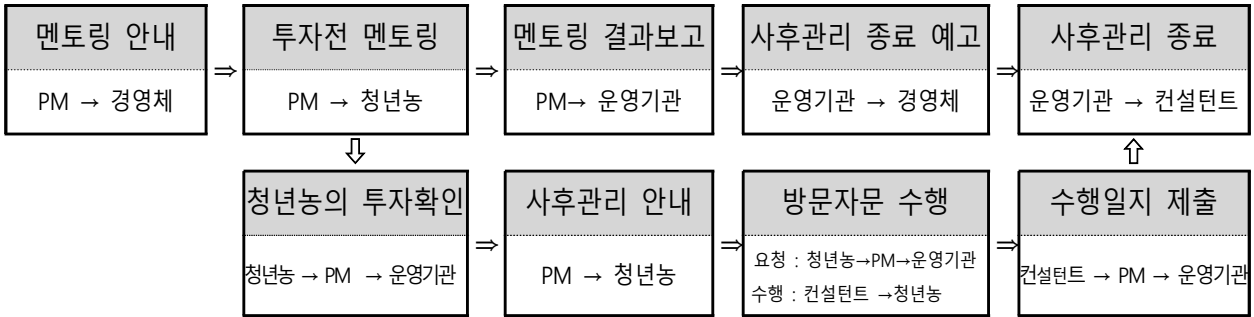
- (결과보고) 과제책임자(PM)는 협약완료일 7일 전까지 참여컨설턴트의 심층컨설팅 수행결과를 취합하여 완료보고서[별지 서식 제10호]를 작성하고 내용을 경영체에게 설명
- (완료확인) PM은 경영체가 컨설팅 수행과정 및 결과보고 내용에 이상 없음을 확인해 주는 완료확인서[별지 서식 제11호]를 첨부
- (완료보고) PM은 완료확인서, 완료보고서 및 수행일지와 관련 자료를 제본하여 제출

- 운영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완료보고서, 완료확인서, 수행일지 및 참고자료,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완료평가표[별지 서식 제12호]를 사용하여 평가
  - (만족도 조사) 완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영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별지 서식 제13호]를 실시
  - (완료심의 자료제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과제책임자(PM)가 제출한 완료보고서와 만족도조사 결과 등을 심의위원회에 제출
  - (완료심의) 심의위원회는 완료심의 의결서[별지 서식 제14호]를 사용하여 심의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고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심의

완료심의 기준 및 조치사항						
구분	1차 완료 심의	조치사항	▶	구분	2차 완료 심의	조치사항
정상완료	60점 이상	비용지급		정상완료	60점 이상	비용지급
완료 보류	60점 미만	2주 후 재심의		컨설턴트 해촉	60점 미만	재시행

- 운영기관은 완료심의위원회에서 '정상완료'된 건에 대해 PM 활동비, 컨설턴트 비용을 컨설팅 비용지급 기준표[별표 제1호]에 정한 금액 내에서 지급
  - (과제책임자 활동비 지급) '정상완료'된 건의 과제책임자(PM)에게 컨설팅 비용지급 기준표에 정한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
  - (비용지급 보류) '완료보류'된 건에 대해서는 '정상완료' 심의를 받을 때까지 컨설턴트 자문료 및 PM 활동비 지급을 보류
  - (컨설턴트 해촉) 운영기관은 2차 심의에서도 '정상완료' 심의를 받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제책임자(PM) 및 참여 컨설턴트를 전부 해촉하고 3년간 농식품부 관련 사업의 참여를 배제
  - (재시행) 심의위원회에서 '컨설턴트 해촉'으로 의결된 건에 대해서 운영기관은 과제책임자(PM)를 다시 선정하여 컨설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컨설팅이 정상 완료되도록 조치
  - (심의결과 보고) 운영기관은 매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
- 관리기관
  - (특별이행점검) 관리기관은 자자체의 협조를 받아 심의위원회가 '완료보류' 및 '컨설턴트 해촉' 건에 대해서는 경영체 방문 및 과제책임자(PM) 면담 등의 방법으로 특별 관리하고 그 내용은 [별지 서식 제15호]를 사용하여 기록

## 6)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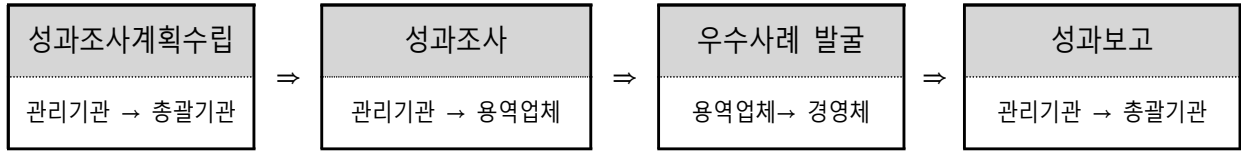


### 《운영기관》

- 운영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정상완료'된 경영체에게 사후관리 수행
  - (투자 전 멘토링 안내) 심의위원회에서 '정상완료'된 경영체에게 사후관리 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과제책임자(PM), 투자 전 멘토링의 범위 등을 안내
  - (사후관리책임자 지정) 심층컨설팅을 수행한 과제책임자(PM)를 사후관리 과제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후관리기관 동안 경영체의 경영상황 및 투자착수 여부, 영농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
  - (멘토링 수행관리) 매월 1회씩 월간 멘토링 결과 보고서[별지 서식 제16호]를 제출받아 멘토링 진행내용 및 청년농의 투자상황을 점검, 관리
  - (사후관리 방문자문) PM은 경영체가 투자를 개시한 후 경영체로부터 방문자문을 요청받는 경우 운영기관에 컨설턴트 방문자문 요청사실을 보고하고, 방문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사후관리 방문자문 결과보고) 사후관리 방문자문을 수행한 컨설턴트는 사후관리 수행일지[별지 서식 제17호]를 작성하여 과제책임자를 경유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사후관리 방문자문료 지급) PM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사후관리 수행일지에 근거하여 컨설팅 비용지급 기준표에 정한 비용을 정산·지급
  - (사후관리 종료 예고) 사업신청일 기준 10개월 차에 접어든 경영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종료예정을 안내
  - (사후관리 종료보고)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진행현황, 특기사항 및 종료 현황을 취합하여 관리기관에 보고



## 7) 성과관리



### 《관리기관》

- 관리기관은 매년 컨설팅에 대한 성과조사를 실시
  - (성과조사계획) 매년 심층컨설팅에 대한 성과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총괄기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성과조사대상) 사후관리가 종료된 해를 기준으로 3년까지 지원대상 경영체의 영농성과를 조사
  - (성과조사) 공모로 성과조사 수행업체를 선정하여 성과조사 업무를 위탁
  - (우수사례) 성과조사 수행업체를 통해 컨설팅 전후의 성과변화가 우수한 경영체를 심층 분석하여 우수사례로 정리
  - (성과보고) 성과조사 결과, 우수사례 및 성과조사 시사점, 사업개선 방안 등을 종합하여 총괄기관에 보고
- 성과조사 내용과 방법
  - (성과지표) 심층컨설팅을 지원 받은 농업경영체의 투자 및 투자에 따른 경영성과 변화를 주요 지표로 설정
  - (성과비교) 일반청년농과 지원받은 청년농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설명

구분	지표개념 / 산출방법
투입	-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컨설팅전 투자계획 대비 컨설팅 후의 실제 투자금액 - 일반청년농 대비 지원받은 청년농의 투자금액 비교
활동	- 창업·투자 심층컨설팅에 대한 컨설팅 및 사후지원 만족도
산출	- 컨설팅 전의 농업경영체 조수입 대비 컨설팅 이후의 조수입 증가율 - 일반청년농 대비 지원받은 청년농의 조수입 변화 비교
결과	- 컨설팅 전의 농업경영체 소득 대비 컨설팅 이후의 소득 증가율 - 일반청년농 대비 지원받은 청년농의 소득증가율 비교

### 3. 심의위원 및 컨설턴트

#### 1) 심의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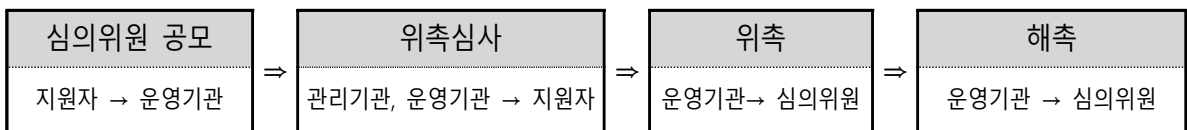
○ 심의위원 자격 기준

- (산업계)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경력자 또는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공장장 포함) 이상 경력자
- (학계)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 (연구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급 이상 또는 연구원으로 연구개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전문자격) 기업관련 전문직 :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농업지도사, 수의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 (실무경력) 컨설팅 관련 기관·협회 소속으로 팀장급 이상
- (영농경험) 15년 이상의 영농경력 또는 동등의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농업마이스터, WPL, 신지식농업인의 자격이 있는 자

○ 심의위원 위촉 취소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
- 불성실, 불공정 평가경력이 있는 자
-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소속기관장의 심의위원 위촉승인을 받지 않은 자

○ 심의위원 위촉 절차



- (공모)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에 심의위원 모집공고 게시
- (제출서류) 심의위원 위촉 신청서[별지서식 제18호], 심의위원 위촉심사를 위한 이력서, 자격 및 경력 증빙자료
- (위촉심사) 관리기관과 운영기관이 지원자의 이력서 및 자격, 경력자료 등을 검토하여 선정
- (해촉) 심의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관리기관과 운영기관의

내부심의를 따라 해촉 또는 재위촉

## 2) 컨설턴트

### ○ 컨설턴트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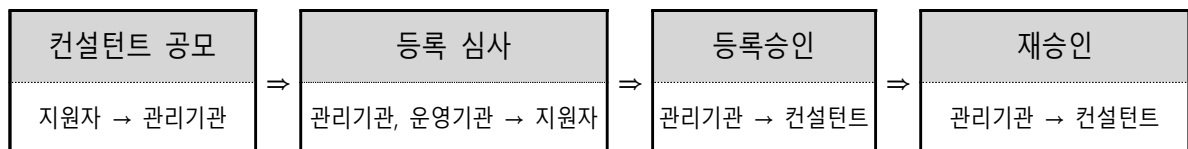
- 해당분야 컨설팅경력, 유관경력 및 자격경력 등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최근 2년간 컨설팅 수행실적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환산경력기간 및 최근 2년간 컨설팅 수행실적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제 3호]를 적용

구 분	자격 기준
경영 및 기술 공통필수	○ 학사 학위 + 10년 이상의 컨설팅 경험*이 있고, 최근 2년간 2건 이상 실적 보유 * 고졸전문학사의 경우 13년, 박사(또는 기술사·전문자격 보유자)는 4년, 석사(또는 지도사)는 8년 경험
경영 분야	○ 전문대 이상 학교의 경영분야 조교수 이상, 회계사·세무사·노무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 경영지도사, 대기업 소속 부장급(중소기업은 이사급 및 공장장) 이상 경력 보유자 등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등 정부 및 기관에 등록된 컨설턴트 중 공통사항에 충족 하는 자'도 해당 * (전문자격)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경영.기술 지도사 등
기술 분야	○ 전문대 이상 학교의 농식품분야 조교수 이상, 선도농업인*, 농식품분야 기술사(기능장), 기술지도사,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경력 보유자 등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등 정부 및 기관에 등록된 컨설턴트 중 공통사항에 충족 하는 자'도 해당 * (선도농업인) 농업마이스터, 신지식 농업인, WPL 등

### ○ 등록신청 불가 대상

- 신청서 및 신청관련서류를 허위로 기록 또는 제출한 자
- 정부관련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불성실/불공정 컨설팅 경력 있는 자
-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
- 컨설팅 수행 부실로 컨설턴트 등록 해촉 후 만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소속기관장의 컨설턴트 등록승인을 받지 못한 자

### ○ 컨설턴트 등록 절차



- (공모)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에 컨설턴트 모집공고 게시
- (제출서류) 컨설턴트 등록신청서[별지서식 제19호], 컨설턴트 등록심사를 위한 이력서, 자격 및 경력 증빙자료
- (등록심사) 관리기관과 운영기관이 지원자의 이력서 및 자격, 경력자료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결정
- (재승인) 컨설턴트 등록기간은 1년으로 하되 등록 불가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등록을 재승인

○ 컨설턴트 자문비 지급

- (투입 기준) 컨설턴트의 활동비는 경영체를 현장방문하고 수행일지를 제출한 경우에만 자문비 지급 대상 투입일로 인정
- (자문비 기준) 컨설팅 활동에 대한 자문비는 컨설팅 비용지급 기준표 [별표 제1호]에 따라 지급
- (지급대상) 컨설팅 자문비는 컨설팅 완료심의위원회에서 '정상완료' 심의를 받은 후에 지급하며, '완료보류' 또는 '컨설턴트 해촉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 제외

○ 과제 책임자(PM)

- (지정) 운영기관은 컨설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컨설팅 내용을 고려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 컨설팅 관리 역량이 인정되는 과제책임자(PM) 지정
- (역할) 과제책임자(PM)는 지원대상 경영체에 대한 착수회의, 참여 컨설턴트의 수행 상황 점검, 컨설팅 완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상담 등을 책임 수행